

2022년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세입 · 세출 예산 집행 교육



전라북도 남원의료원
JEOLLABUK-DO NAMWON MEDICAL CENTER

2022년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올바른 예산의 집행 교육

◆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세입·세출 예산편성에 따른 올바른 예산집행으로 재무 건전성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22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.

I 예산편성 개요

□ 관련근거

-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사업계획서등의 제출)

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6조(사업계획 등의 제출)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예산의 편성 등)
- 「2022년도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 (행정안전부)
-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재무회계규정 제58조(예산 편성 지침)
-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세입·세출 예산편성 지침

□ 202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

< 202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>

- ◇ 중장기 경영전략 및 2022년 사업계획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성 강화
 -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수요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으로 합리성과 수용성 강화
- ◇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
 - 공공보건의료·정책사업 추진방향 및 진행상황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
- ◇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뒷받침
 -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지속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
 - 소상공인·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, 재정(신속) 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
- ◇ 경영효율성 제고 노력 및 혁신성장 분야 투자확대
 - 사업 수행방식 개선, 수입원 확대 발굴,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한 수익 증대로 경영수지 개선 도모
 - 성과관리, 예산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최대한 억제
- ◇ 윤리경영체제 확립으로 낡은 관행 혁신 및 신뢰회복
 -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인사운영 체계구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인건비 반영
 - 경영공시 내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경영환경 구축

□ 2022년도 예산편성 주요 개정내용

-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과목 표준화
 - (의료원) 현행 체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과목을 신설하여 별도 과목 신설 없이 예산편성지침을 활용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보완

- 향후 2023년 예산편성 시 표준화 코드 등 적용하여 회계프로그램 반영 후 실시 예정
- 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용하도록 조문 보완
 - 무분별한 수당 신설을 억제하고 총인건비를 기본급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조문 명확화
- 복리후생비 중 초·중·고 자녀 학자금 지원근거 삭제
 - '21년 신학기부터 초·중·고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른 학자금 지원근거 불필요

Ⅱ 재정여건

재정여건 종합

-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증가에 따른 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 예상되나, 위드(with)코로나에 따른 병원 정상 운영 시 회복기간 동안 진료수익 감소가 예상되며, 각종 사업 정상화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로 재정여건은 열악할 것으로 전망
- 이에 따라 세출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, 역점사업 및 의무적 경비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긴축재정 운용 필요

□ 세입여건

-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(수가) 인상률(병원 1.4%) 반영
-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환자 외부 유출로 정상 운영 시 회복기간 동안 진료수익 감소 예상

□ 세출여건

- 병원 정상운영에 따른 재료비 및 관리운영비 증가 예상
- 임금피크제 대상 증가에 따른 퇴직금 증가 예상
- 호봉승급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예상
- 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절감 예상
- 역점사업 확대·신설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비용 등 증가 예상

Ⅲ 주요 예산집행 지침

□ 예산집행 10대 원칙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

- 남원의료원은 국가 또는 전라북도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전라북도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 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됨

② 당해 출자·출연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 지출의 금지

- 법령 또는 조례, 정관 등에 근거 없이 남원의료원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

③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

- 예산으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

④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

- 회계연도 개시전,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,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

※ 예외 : 예산의 이월, 지난 회계연도 지출,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지출 등

⑤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

- 남원의료원의 모든 수입은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,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

⑥ 내부규정에 근거한 관련경비 집행

- 급여는 내부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로도 지급할 수 없음
-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,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,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 하여야 함

㉓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

-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·조례·정관·내부규정 또는 계약·기타 정당한 사유로 남원의료원에 대하여 채권(정당한 청구권)을 가진 자 외에는 집행할 수 없음

㉔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

-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

㉕ 유사·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

- 남원의료원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,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를 하여야 함
-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·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됨

㉖ 연도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

-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- 각 부서에서는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억제
- 연말에 무리한 집행잔액의 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 도모

IV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

□ 경비

-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
- 통신비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게 한하여 지원
- 행사시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 제작·지원으로 낭비요인 발생 억제
-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금지
-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
- 업무추진비(접대비)는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
- 업무추진비(접대비) 사용 시 집행목적, 일시, 장소 및 집행대상 기재
- 자산취득비는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
- 학술행사, 세미나,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지급 가능
- 홍보비 집행 시 비효율적인 소지가 있는 전광판, 방송 등 다수 영상매체 출연을 통해 중복적으로 집행 금지
- 민간기관 위탁교육 시 1인당 교육단가 산정하여 교육완료시 인원 확인 후 집행(필요할 경우 입교시 집행)
-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내부규정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
- 남원의료원 소속 임직원은 담당사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남원의료원이 주관하는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참석 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 금지(무보수 비상근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우,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)
- 변호사, 회계사, 감정평가사, 건축사,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기관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 실례 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
- 강사료는 소속 시·도 교육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(우수 강사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추가지급 가능)

- 남원의료원이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 경비는 행사비에 집행
 - 초청장, 홍보유인물, 현수막, 상패제작 등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각종비용
 -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·장비·물품의 임차료 및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
 - 무료 봉사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(간식비 포함 / 8,000원)
 -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, 행사관련 기념품, 기관선물의 구입은 본 과목에서 집행금지(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)

□ 업무추진비

- 업무추진비 집행은 신용카드,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
- 현금사용 금지
- 업무추진비 집행은 신용카드,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
 - 업무추진비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. 다만,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한 격려금, 축의·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
 -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, 금액(기 지급, 금회지급)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(기본계획 수립·방침 포함)를 작성하여야 함
 - 개산금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함
 -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, 지급일시, 지급금액,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
- 심야(23시 이후)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금지(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(출장명령서 등)를 제출한 경우 가능)
-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,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

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(「청탁금지법」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점대비는 3만 원 이하,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)

※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

-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, 일시, 장소,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전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
- 업무추진비로 상품권, 기념품,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,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
- 업무추진비를 기관장 위주로 집행 금지
-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
 - 개인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
 -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

□ 사업비

- 공사, 용역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
-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집행 및 집행 규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에는 불용조치를 취하여야 함. 또한, 각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의 절감 또는 수입의 초과달성 실적을 내부평가에 반영 가능

□ 기타 세부내용

- 2022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참고

붙임 2022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1부.

2022년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
세입 · 세출 예산 집행 교육



전라북도 남원의료원
JEOLLABUK-DO NAMWON MEDICAL CENTER